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3. 7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3. 7
- 다. 상 정 일 자 : '97. 3. 18 (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 안 자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나. 제안사유

-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위원 자격, 위촉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함.

다.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 구성
 -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수가 위촉
- 지도위원의 위촉(실무위원회 구성 삭제)
 - 읍면별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읍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
-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 구성
 -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군 및 읍면에 협의회 구성
 - 군수는 협의회 운영을 위해 수당, 여비, 교육기회제공, 표창 등 필요할시 지원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 병 향)

- 본 조례 개정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32
----------	---------

제출년월일 : 1997. 3. 7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구성
-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나.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지도위원의 수

- 읍면별 10이내로 구성하되 읍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라.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 구성

-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에 관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군수는 협의회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순군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12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한 한정치산자
2. 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3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축하여야 한다.

제15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3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에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화순군청소년위원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